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8192)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1)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6)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9)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8)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9)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2)
 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3)
 2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4)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5)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7)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6)

상정된 안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4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4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4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5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5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5)	5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5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	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	5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2)	5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2)	5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1)	5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0)	5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4)	5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6)	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9)	5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8)	5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5
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5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5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5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9)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2)	5
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3)	5
2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4)	5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5)	6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7)	6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6)	6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융위원회 소관 32건의 법률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쟁점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의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1)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8)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43)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5)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8)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2)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2)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1)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40)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4)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26)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69)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8)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2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9)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2)
2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3)
2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4)

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5)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77)

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016)

(14시08분)

○**소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이상 9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논의를 거쳤고 여야 위원님들이 소소위를 통해서 내용들을 합의하고 축조심사한 바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박현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금 조문반영안이라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소위원장 박상혁** 이것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 내용들은 다 아시고 어제 다 저희들이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조문 반영한 자료 1쪽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 정리된 내용입니다.

먼저 요건과 관련해서는 선행매수 후 지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매수 등을 하는 경우로 하였고 대상은 발행주식총수의 50%+1주에서 기보유 주식을 제외한 수 이상에 대해서 의무공개매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외사유는 50% 이상을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되 그 밖의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매수가격은 법률에서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내용은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의무공개매수 가격의 산정기간에 대한 글로벌 사례, 의무공개매수 대상자의 인수부담,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조건 등에 대해서는 공고기한은 선행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밖의 다른 방법 매수 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또 응모주식이 예정주식보다 많은 경우 비례 배분하여 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 관련해서는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분에 대해서, 의무 미이행 또는 절차위반의 경우에는 선행매수 전체 취득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명령은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추가한 추가취득분 또는 의무 미이행이나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명령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의무공개매수 미이행 또는 다른 방식 취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공고기간 내 공고 미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적용례·경과조치 등은 소위에서 정한 그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소소위 논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배 위원 제가 지난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지분을 50%+1주로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의 효과가 전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역으로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자본시장 개혁에 나설 의지가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실망한 나머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소위에서 몇몇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상장 법인에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평균이 29.21%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 평균은 13.87%입니다. 약 44% 정도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고 일반주주의 지분 평균은 56%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주식 인수 방식의 M&A에서 50%+1주에 대해서만 의무공개하도록 저희가 법을 개정하게 되면 결국 일반주주는 M&A가 있는 상황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시장에서의 주가 이상으로 본인의 주식을 인수자에게 팔 수 있는 게 10주 중에 1주, 정확히는 10주 중에 1.2주만 그 가격을 받고 팔 수 있게 되고 나머지 9주는 그렇게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제도 도입을 했다 또는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소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이 안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다른 위원님들……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소소위에서도 논의가 됐고 여야가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합의가 돼서 일단 의견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들은 주식 발행 규모, 그러니까 자산의 규모나 그리고 거버넌스의 형태에 따라서 대주주의 주식 지분이 아주 특징적으로 딱 갈립니다. 그래서 규

모가 굉장히 크고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 데는 대주주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대개 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홍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규모가 큰 데거나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는 50 플러스 1주도 영향을 조금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견업체나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이나 특수 지분이 대개 50%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의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부분의 효과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논의될 때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규모를 나눠서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차후에도 이 법이 다시 다 다루어질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지금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50% 플러스 1주를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잖아요.

혹시 부위원장님께 여쭙볼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민병덕 위원 100%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50% 플러스 1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거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건가요,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상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는 않고요 50 플러스 1주 이상으로만 법률에 명시하는 겁니다.

○민병덕 위원 아, 위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기본 철학은 이중가격이 생기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해서 일반주주한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는 그런 주주가치, 일반주주 보호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M&A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M&A 측면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M&A를 좀 제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분을 많이 사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M&A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M&A가 좀 활성화될 거냐 이런 측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주주가치만 생각하면 100%의 논리적 타당성이 있으나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지금 사실상 이런 기업들의 사업 재편, 구조 개편이 꽤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정 균형이 좀 필요하고.

어차피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몇 %까지냐가 M&A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도 50 플러스 1주 이상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일단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도의 운영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또 제도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금이라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조문을 읽어 보면 좀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안 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앞의 1페이지에 지금 논의를 다 정리를 잘해 놔는데 거기에 보면 ‘공고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행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 공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선행매수를 해서 25% 이상이고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와 현재 25%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주주로서 추가로 매수 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2페이지 133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1호는 25%가 아닌 사람이 25% 이상 해서 대주주 되는 경우이고 2호는 이미 25% 이상을 보유하고 추가로 하는 것……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추가로 더……

○송언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34조 1항 단서에 15일이라고 하는 공개매수공고라는 규정이 있는데 단서 규정을 보면 133조의2 1항 1호 또는 2항에 따라서 선행매수 등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133조의2 1항의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15일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단서를 신설한 이유가 선행매수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행매수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개매수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2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기 때문에 추가로 공개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단서가 아니라 본문 조항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례 규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행매수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0% 플러스 1주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 날짜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것을 기한을 적용해서 의무공개로 들어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게 나는 머릿속에 언뜻 안 들어오거든요. 어디에 내가 모르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좀……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134조 1항에 각 호의 사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매수를 하려고 하는 때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매수부터 시작을 한 경우에는 선행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산일을 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송언석 위원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런데 133조의2 1항의 1호와 2호가 다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조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2호에 해당되는 것도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의무공개매수는 어느 기간 동안, 1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15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때나 이것 의무공개매수를 한다 그러면 1주라도 더 살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인지……

그러면 1주라도 더 사려고 하는 마음속의, 내심의 의사를 가진 그날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행위가 안 나타나면 알 수가 없거든요.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가 25%가 안 되는 사람이 25% 이상으로 되는 그때부터 하면 무조건 50% 플러스 1을 해야 되는 날짜가 나오는데 2호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그 날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호는 이미 25%를 넘겨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한 날 공개공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산일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송언석 위원 언제 공고를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왜냐하면 이미 25%를 넘겨 있는 사람은 추가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가 도입·적용이 안 되고요 추가매수를 할 경우에 의무공개매수가 도입·적용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바로 공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추가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하고 의무공개매수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선행매수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

○송언석 위원 알았어요. 지금 그 말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물었는데 말씀하신 내용의 조문을 좀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133조의2의 3항에 부실징후, 회생절차 그리고 50% 이상하고 4호에 목적·유행·권익침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정한다고 해 놔는데……

부위원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부분을 좀 말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를 들면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해서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는 최대주주에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예를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담보권 행사함으로써 25%가 넘어갈 경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자기는 최대주주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담보권을 실행하다 보니까 담보 맡겨 있는, 질권 설정돼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자기가 채무 이행 못 하니까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사가 없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경영할 생각이 없는데 일시에 지분을 갖는 경우 등 그런 경우가 실무에서는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2호가 적용되는 분야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조문을 찾기가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이미 30%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지요? 쉽게 설명을 해 봐요. 30%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의무공개매수 신청을 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니까 30% 이상 가진 사람이 추가로 1주라도 더 가지고자 하면—이 사람이 최대주주라면—그 시점에 바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를 나는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속의 시점은 벌써 10년 전부터 더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행위를 오늘 해서 더 사려고 해. 그러면 기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게 매우 불확실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공고를 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면 공고를 해라라는 것은 공고 없이 매수하면 이게 바로 절차 위반이라든가 의무 미이행으로 봐서 바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김형연 위원** 제가……

○**조정훈 위원**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형연 위원님 하시고 조정훈 위원님, 같은 얘기신 것 같은데.

김형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정훈 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형연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과 관련해서 133조의2 1항 2호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1호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호는 어떤 경우냐 하면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를 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 법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없겠지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예.

○**김형연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경우는 본문에다 달 일이 아니라 부칙에 달아서 적용례를 두든지 해야지 이걸 본문에 달아 놓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고는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분의 25 있으면서 최대주주인 자—이 법 시행 당시에—그 사람은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면 1주를 사면 안 돼요. 무조건 50%+1에서 갖고 있는 걸 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송언석 위원** 그렇지.

○**조정훈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형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2호를 본문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은 부칙으로 빼 가지고 적용례에 집어넣어서 적당히 적용례를 만들어야지 본문에다 넣을 일은 아닌데.

○**소위원장 박상혁** 금융위에서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앞쪽에 보시면 133조의2 이렇게 가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33조가 공개매수고 133조의2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매수와 의무공개매수 다 포괄해서 134조가 공개매수의 공고와 신고서 제출을 한꺼번에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공고를 해라 이렇게 다 정해 놔서 누구든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리거가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려고 하면 공고 안 하고 하면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절차가 없고, 다만 시장에서 최대주주가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서 트리거가 돼서 하려고 하면 법이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15일 이내에 공고를 해라. 공고를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저는 법 조문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수석전문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호는 사례가 완전히 다른…… 1호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M&A의 과정이고 최대주주가 흥길동

에서 누구로 바뀌는 과정인데 2호의 경우는 송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든 여러 이유는 지분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행위는 50%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의 취지가 맞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정훈 위원** 왜 그게 필요한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호·2호를 나눴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로 25% 이상에서 최대주주가 돼서 지배권을 갖는 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거지요. 그게 이견이 있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대주주인데 자기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추가 지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공개매수의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소액주주 내지 일반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그 프리미엄을 자기만 누리게 되니까 당연히 일반주주한테도 그 권리를 주는 거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그냥 참고로 가져왔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주가 25% 이상을 갖고 있는 특정 회사의 최대주주인데 그 주주가 여러 이유로, 적대적 M&A 등등을 염려해서 지분을 올려 간다고 할 때 소수주주,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으로부터만 비싸게 사지 말고 전체에게 그 기회를 나눠 주라라는 취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50%+1주까지 살 재원 마련이 안 되면 현재 지분 25%에서 올릴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선행매매가 있어 트리거가 되면 몰랐던 사람이나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법에서 ‘너 15일 이내에 무조건 공고를 하고 20일에서 6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사라’ 한 거고요.

○**조정훈 위원** 그것은 1호고, 2호.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런 사람은 ‘내가 지분을 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금조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공고를 하고 앞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1호는 25%가 된 상태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15일 내에 공고를 하라는 거고 내심에 할 사람은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준비가 됐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공고하는 시점에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을 두고 사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주주는 자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려고 그러면 25와 50의 중간은 없고 무조건 5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훈 위원** 아니, 그거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50%+1주 이상을 사는데 응모를 적게 하면……
- 조정훈 위원 그것은 해 봐야 되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먹고 가는 거고……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제도 자체의 취지가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된 이중 가격 문제를……
- 조정훈 위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정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아서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딱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된다 해서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제가 끼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40% 정도 가지고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조정훈 위원 이제 그렇게 못 하게 되는 거지요.
- 신동욱 위원 40%만 가져도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가 있는데 50% 살 자금조달 계획이 없으면 23%쯤 가지고 계속 버티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 조정훈 위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 신동욱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M&A는 이해를 하겠는데……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3%는 1호로 가고요. 25% 이상인 자가 추가하는 겁니다. 1호, 2호가 좀 다릅니다.
- 최은석 위원 부위원장님, 아마 그런 부분은 실제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하면 굳이 50%+1주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주식도……
- 최은석 위원 의무공개매수제도 금액에 대해서 대주주가 내가 얼마 정도로 제시하겠냐고 하면, 시가보다 어느 정도 높이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50%+1주까지 안 가고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끝인, 완성할 수 있는 거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시가도 보고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겁니다.
- 소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지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기회 제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훈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송언석 위원 잠깐만요.
-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언석 위원 지금 박상혁 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할 때 주식양수도 방식에 따라서 경영권이 이전될 때 기존의 대주주는 자기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데 소액주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나눠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50%+1주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매수해야 된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게 기회를 준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준다,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만약에 경영권이 바뀌게 되면 인수하는 회사에 새로 나타난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소액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으로는 우리 회사가 이러다 망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 사람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돈을 주고 주식을 사라,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소액주주에게 주겠다 그게 지난번 논의할 때 입법 취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1호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내가 25% 이상을 가지고 있고 대주주야.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 회사를 공격하려고, 적대적 M&A 비슷한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재 30%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주주 같으면 거기에 한 10% 정도 더 사서 40% 정도만 하면 이미 주식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 내가 경영권을 확고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1주라도 더 사려고 하면 이 조항에 따라서 당신이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말든 간에 지금 공개매수를 해서 50%+1주까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법 조항인 것 같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사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위원님, 주주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는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제도의 틀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50%+1주를 매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20%를 더 사야 되는데 응한 사람이 5%밖에 없었다, 그러면 5%만 사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은 2차적인 이야기야. 제도의 기본 틀은 50%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대주주는 50%까지는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입법 취지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것도 기술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대략적으로 이해하셨는데 궁금해하시는 것은 공고의 시점, 발생하는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리거가 없는 일반공고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시점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공고를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언제 해야 될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심에 내가 이걸 하겠다는데 정부가 법 조문에서, 네가 내심의 어느 단계에서 이걸 결정하느냐, 자금조달이 됐느냐 이게 아니고 하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공고 절차를 거치고 의무공개매수 기간을 20일에서 60일을 제공해라라는 절차적 규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선행매수가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번에 최은석 위원님이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공고하는 날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선행매매가 있었던 경우에는 선행매매

일의, 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간 가격 중의 높은 가격 이렇게 정하는데 저희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그때 과거 증권거래법에는 1년이었는데 지난번에 소소위 할 때도 그렇고 증권거래법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니 6개월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해서 부대조항에, 부칙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까 2페이지에 보면 매수가격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즉 설명을 하는 방법들,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개월 일지 또는 이거일지 그런 부분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소소위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최은석 위원 그것은 선행매수가 있을 때고, 여기 2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그냥 죽 갖고 있었고 그동안에 거래가 없으니까 신고일 전일의 증가보다 더 높게 하면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주주 마음이에요. 이 법의 취지에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 말씀대로 과거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시행령을 실무자한테 확인하니까 증가 시점은 대주주가 정할 수 있게 돼 있지 그것을 과거 시점을……

○최은석 위원 예, 대주주가 정하고 그 시가보다 더 높게. 그렇지요? 신고서 접수일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증가보다 높게.

○최은석 위원 그날의 증가보다 높게 하면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최은석 위원 그 높은 금액을 대주주가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추가로 더 매수할 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략적인 계산을 하고 금액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호라고 보시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건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김형연 위원 이게 소소위에서 합의된 안인 것 아니에요?

○서일준 위원 예, 합의된 안입니다. 합의된 안인데……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형연 위원 아니,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호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질물이에요. 저도 이것 보고 약간 깜짝 놀란 감이 있는데, 이게 주식 인수에 의한 경영권 양수에 따른 프리미엄을 일반 소액주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게 이 입법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입법 취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게 2호인 거고.

그리고 이것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2호에 해당, 그러니까 이 법이 만일에 시행이 된다면 1호를 거치지 않고 2호가 될 수 없잖아요. 만일 앞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2호에 해당되는 자는 나타날 수 없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빼고. 이 법 시행 당시에 2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사람 빼고 앞으로 이 법 시행한 후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1호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공개를 해야지,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소위원장 박상혁 곽현준 수석님, 뭘……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아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법 시행 당시에 2호였던 사람들 외에도 이 법 시행 후에 1호에 의해서 선행매수 후에 다시 또 35%가 된다고 해서 최대주주가 된 상태로 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이 법 시행 중에 추가로 할 때 2호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의무공개매수를 했으나 50% 이상을 못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2호에 해당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호에 걸려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적용례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25%, 30%……

○김형연 위원 그러면 이 2호는 그때를 생각해서 만든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기존 주주 플러스 의무공개매수를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분율이 한 40%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살려고, 50%+1주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우리가 논의하다 보니까 착각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요. 50+1주 때문에 만드는 법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아닙니다.

○서일준 위원 부위원장님, 50+1은 소소위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는데 다만 2호 법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쟁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 가지고 있는 2호 대상이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10%만 필요한데 의무공개매수는 50+1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절차적으로.

○서일준 위원 그러면 공고 전일 증가보다 높게 만든다면 증가 이후에 자기는 10%만 더 추가로 가지면 40%가 되는데 20%를 더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자금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경영권 방어에는 오히려 지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도 전략적 행동을 할 것이고 소액주주들도 그 가격에 따라 전략적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은 자기가 정말 10% 정도만 사고 싶으면 그 가격 수준을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서일준 위원 낮춘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사고 싶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주가의 한 50% 이상 하면 대부분 살 것이고요. 그 시점하고 가격의 어떤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아마 시장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역설이 될 수 있는 게 자꾸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나눠 주자라는 취지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전일 증가가 기준가가 된다면 전략적 행동을 한다면 이 대주주는 아마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어쨌든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 거예요, 낮아야지 자기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기업은 정말로 절박한 사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 추가 매수가 필요한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자금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어쨌든 비밀을 잘 유지해 가지고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떨어뜨려서 최저 주가일 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전략적 행동 때문에 소위 다른 주주들은 피해를 입을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가 늘 시장은 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이런 것을 강제했을 경우에, 우리가 완전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 피해를 기업이 입을 것인가 소액주주들이 입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단언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따라서 팔겠다는 사람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올려서 팔면 더 득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이 기업에 평생 투자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 부작용도 사실은 엄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악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증권법이라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거나 조작하는 자체는 중대한 증권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신동욱 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전략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전략적……

○**신동욱 위원** 그게 무슨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가를 누르는 것을 이룰 테면 법이 정하는 기준, 불법적인 수단으로 하면 그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걸 그걸 다 어떻게 법으로 재단합니까? 그것은 못 하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그것은 이런 증권법에 어떤 불법을 규율하거나 공시를 하거나 저희가 주가조작 감시를 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도의 행태면 증권시장에 많은 정보가 있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행동주의자들도 있을 거고 M&A를 시도하는 반대편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주주의 판단을 거치게 이렇게 돌아가는 자본시장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그 한 사람을 놓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으로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동욱 위원** 아니요,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것은 25% 정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방어할 때는 대개의 경우는 적대적 M&A 하러 들어오는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서,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나면 그 주가를 감당하면서 50+1까지 자본조달을 해서 기업을 방어하기 위한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고 또 부차적으로는 나쁜 마음을 먹고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잘 판단이 안 되기는 합니다. 협상의 산물로 50+1이라는 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한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상법을 깨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주주한테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이지 이걸

만드시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서 꼭 다 사 주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 정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위원장 박상혁 이강일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이강일 위원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포획하기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시장의 자정 기능을 어느 정도 믿고요.

작년에도 상장 폐지하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을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서 공개매수 한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팔지 않고 있던 주주들하고 잘 협상을, 제가 그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밝힐 수 없지만 잘 조정해 준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송언석 위원님도 조금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공고 가격의 기준을 굉장히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욱 위원님이, 사실은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 한 시점만 하지 마시고 기간을 좀 넉넉히 가져서 시장 가격이 평이하게 어떤 게 정상 가격인가를 좀 알게 되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 이상으로 공고를 해서 팔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딱 봐 가지고 한 시점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공개돼 있는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다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거나 아니면 시점을 몇 개 잘라 가지고 평균 가격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유럽이나 선진국 법제를 보니까 12개월이 꽤 있고요 또 6개월도 꽤 있고 이게 팽팽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태리가 최근 금년 4월에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 같습니다. 어느 가격을 하는 것이 통상 주식의 양수도 관련해서 미리 선행매수를 하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고, 저는 이 분야는 시행령에 위임해 주시면 해외 법제를 한번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강일 위원 그것 다시 보고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금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단일 가격이 맞는지 또 평균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균형되게 할 수 있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송언석 위원 보면 불수록 의구심이 자꾸 늘어나서 미안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공개매수 제도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같은 카테고리 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때 가지 준용 조문을 빼고 별도 이렇게 따로 구성

을……

○**송언석 위원** 아니,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 물으니까 잘 들어 보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 봐요.

자본시장법 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133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이것 바로 직전에 기존에 있던 법이 133조인데 거기에 공개매수는 1항, 2항 해서 이러이러하다 되어 있습니다. 3항 단서에 보니까 ‘매수 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이 133조의2 제3항의제4호하고 똑같아요, 문구 자체가.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각각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담보권 행사 같은 기존 권리 행사로 인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133조 3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4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3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1호 소각, 2호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그다음에 3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이런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가 4호, 5호가 특수관계인 그리고 7호에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각이나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것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신주인수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이런 부분은 133조의2 의무공개매수 2항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서 전환사채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5% 이상을 할 때 공개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이런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다 제외되는 걸로, 공개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이런 전환사채권 등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143조에서 얘기한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주식’ 이 부분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개매수하고 의무공개매수가 그 이름은 비슷하고 취지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높은 단계의 규율이 필요한 것은 의무공개매수로 일단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임을 말씀드린 것은 공개매수 제도는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예외적인 사항들이, 예컨대 회생이 같거나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도 예외 사항을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일단 시행령으로 생각한 것은 담보권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구조조정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국회에서 대략의 중요한 사항을 법에다 다 상향 입법을 해라 해서 이 조문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예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예는 저희가 만들어 낼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전환사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환사채는 전환하기 전까지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환사채 자체는 공개매수할 때 규율 대상으로는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형태니까. 그런데 의무공개매수는 저희가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전환권이 행사되면 이게 25%를 넘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전환사채는 포함해라라는 그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입법기술적인 측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이 충분할지는 모르겠는데……

○**신동욱 위원** 전환을 결정을 할 때는 나머지 주식도 살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요, 전환이 됐을 때 25% 넘어가는 상태인데 전환사채를 사 가지고는 이게 트리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옵션이니까 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순간에는 된다 하고 이 법의 조문에 곳곳에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공개매수의 정의조항에 보면 ‘주식등을, 매수등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식등’이라 하면 의결권이 살아 있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가끔 옵션이 있는, 그게 아닌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주식등’, 그냥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의 특색에 감안해서 전환이 되는 경우에 의결권이 살아나는 경우는다 포섭을 하도록 입법체계를 갖추어 두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마지막으로 조정훈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두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상속의 경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외 할 때. 그러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가지고 특수관계자가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서 최대주주가 되면 의무공개매수제도에서 예외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는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는……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분이라는 게 특수관계 지분 다 포함해서 25%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어차피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의 범위라는 게 대부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올 텐데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가…… 상속이라는 게 유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상속을……

○**조정훈 위원** 증여의 경우는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증여의 경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은, 이 조문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유상의 대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조항을 쭉 쫓아 가면 증권거래법에 ‘매수등’의 정의가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해서 입찰, 유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는 유상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 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상속과 증여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제삼

자의 결정에 따라 됐기 때문에 자기는 그 지분을 갖더라도 최대주주가 돼서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의무를 부여하면…… 돈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분만 받았는데.

저희가 EU 체계나 이런 걸 보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을 성안하는 단계에서 상속·증여가 되게 중요한 이슈다 해서 법률 전문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송언석 위원님하고 김형연 위원님 등등, 저는 솔직히 상속·증여도 논쟁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회의록에 제가 발언을 남길 정도는 아니고요.

두 번째 기준, ‘기존의 지분을 20%’ 이 경우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시나리오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최은석 위원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무공개매수를 했을 때 그 가격이 전날 공시가격 이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는데 1만 500원, 1000원 해 보다가 물론 50% 플러스 1까지 제한은 하지만 매수가 25%에서 30%까지밖에 안 올라왔다 그러면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자기 경영권 보호하는 내 목표 경영지분율까지. 나는 예를 들어 45%까지 올리는 게 내 목표인데 조금조금씩 올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실은 경영권 보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영권이 확실한데 괜히 지분구조를 늘려서 채원조달 비용을 추가로 일으킬 기업인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M&A 관련된 사례들도 보시면 어디가 죽고 사는 지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영자도 알고 있고 적대적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죽고 사는 지점, 왜냐하면 특수관계자 지분 같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지점을 두고 지금 50%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들어오면요 이것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적대적 M&A를 고민하는 분들은 적대적 M&A를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자기 지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적대적 M&A도 소액주주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이 카운터오퍼를 쳐서 1만 500원, 난 1만 700원 줄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주가가 갑자기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시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다음 의무공개매수는 1만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만 1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채원조달계획을 초과해서 또는 내가 목표하는 경영지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쉽게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경영권 보호를, 이게 경영권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선인지 악인지는 다르겠습니까만 선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경영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어야 될 취지가 여기 있을까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본주의에 굉장히 경우의 수도 많고 전략적 결정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 측면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란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매수보다는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을 요청을 드려서 입법에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주가치에 충실해서 경영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견제장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의무공개매수 없이 별도로 조용히 은밀하게 지분을 취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누가 또 몰래 지분을 사려고 하면 인수자금을 늘려 버리는 겁니다, 50 플러스 1주만큼. 자금을 많이 가져야지만 또 경영권을 바꾸니까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플러스 1주의 균형점을 찾은 이유가 M&A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M&A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100까지 하면 또 못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에서 보면 경영권을 막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솔직한 입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권대영 부위원장님, 이게 우리 기업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오늘 속기록에 남으시니까 정말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는 게 솔직히 많이 있어요, 안 해 본 일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소액주주뿐만 아니고 기업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년 후 시행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1년 안에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부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1년 안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저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다 구체적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토론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발언 기회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데 송언석 위원님은 특별히 제한해야 될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니까 2조에 적용례가 있어요. '13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주식의 매수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본문 중에 어디선가 '이하 주식의 매수등이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얼핏 보니까 앞에 133조 1항에 '주식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매수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하 매수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 돼 있어요. '주식등'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주식등의 매수' 또는 '주식의 매수등' 이 부분은 이 절에서만 해당되고 부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서는 용어를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법률 용어 자체가 앞에 어디서 데피니션(definition)이 있는지 좀 찾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2조의 단서에서 보니까 ‘이 법 공포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는 제외한다’ 되어 있고 3조에서는 ‘이 법 공포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는 133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 단서와 3조는 서로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2조의 단서를 3조로 바꾸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2조는 ‘적용한다’까지 하고 3조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2조에서 얘기하는 ‘주식의 매수등’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3조에서 얘기하는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라는 부분 이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매수등’은 아까 말씀 주신 133조에서 ‘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제2조에서도 133조의2의 개정규정이라고 박았기 때문에 133조의2에 적용하는 ‘매수등’이라고 해서 약칭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33조의2 규정은 ‘매수등’이라는 약칭이 적용되는 규정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지금 확실하게 조문을 찾을 수는 없으나 제가 이 법안 검토할 때 제일 열심히 본 부분이 정의조항의 ‘주식등’과 ‘매수등’ 조문을 제가 그때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갑자기 위원님이 조문을 찾으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으나……

○소위원장 **박상혁** 뒤에 실무자, 혹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어떤 때는 ‘매수등’이고 어떤 때는 ‘주식등’이고 어떤 때는 ‘주식’인데 이걸 일부러 다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한 이유가 아마 CB, BW 같은 그것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문을 지금 바로 찾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법사위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것 틀렸으면 따로 위원님께 조문이 어디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일부러 ‘주식’과 ‘주식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마 CB, BW로 추정됩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게 맞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신설되는 133조의2에서는 ‘주식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133조를 얘기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133조에는 ‘주식등’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133조의2에서는 ‘주식등’이라는 말은 없고 ‘주식’이라는 말만 있으면서 ‘매수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수등’에 해당되는 게 앞에 133조에서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고 한다’, 매수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입찰도 있고 기타 유상취득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주식’이라는 말을 썼지 ‘주식등’이라고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조문 3페이지 앞의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김형연 위원 133조의2 1항 2호에 ‘주식의 매수등’이 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33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이렇게 ‘주식’으로 한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걸 CB, BW로 일단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여기가 '주식'은 아니지만 '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조문에 가서 쪽 설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CB, BW가 포함되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불법을 규제할 때는 그 자들을 포함해서 '주식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굳이 CB, BW를 넣지 않아야 될 거면 '주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것은 증권거래법 전체가 그렇게 일괄되게 정비가 됐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133조의2가 아니라 133조에 규정한 것에 따라서 주식과 주식등이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제가 이래서 송언석 위원님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잘 세심하게 짚어 주시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오늘 부칙 하나 잡았네.

○**소위원장 박상혁** 좀 전에 광현준 수석도 놀랐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와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

보통 체계·자구를, 마지막에 조문을 정리할 때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하나하나가 다 아주 중요한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다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보지 못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참고로 제가 법사위 제2소위, 그러니까 법사위 고유법 아닌 타위법 심사소위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체계·자구 수정 안한다 그래 가지고 저 있을 때 제2소위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해서 넘겨야 됩니다. 법사위에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잡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속기록에, 그다음에 아까 박홍배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기록한 것은 기록한 대로 남기고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광현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광현준** 자료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동 계정에 남은 부

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으로 인해 다른 금융업권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한 업권의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이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계정의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제도는 2011년경 저축은행 부실 정리 과정에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없이 금융권에서 일으킨 문제는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한 25년에 걸쳐서 이 재원, 그 당시 약 15조 원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 특별계정을 만들었는데 실제 투입 규모가 27.2조 원, 부실 저축은행 31개, 자산 42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보다 12조가 더 든 그 과정에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저축은행의 부실한 특별계정의 잔존 부채를 털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의 도움이 없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연 위원님.

○김형연 위원 제가 부위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김형연 위원 그때는 부실 규모를 15조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27조 20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실제 투입을 했습니다.

○김형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치보다 12조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뭔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도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처음에 저축은행 130개를 정리하려고 저희가 할 때 실제 감독원이 가거나 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희가 부실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거치고, 특히 예보가 들어가니까,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정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청산가치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 건물을 공매하거나 이런 과정을 보니까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할 규모가 그때 한 절반 정도였는데 전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저축은행으로 전이가 되면서 아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 것, 저축은행이 당초 우리가 정리할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 그렇게 돼서 11년에 이 기금을 만들었지만 실제 저축은행 정리는 12년도, 13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입 규모가 늘었고 그 투입 규모는 예보채 기금에서 저희가 차입해서 일단 쓰고 지금 갚아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연 위원** 이게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대신 갚아 주고 책임 있는 자한테 구상을 하잖아요. 그 구상금은 다 이 재정에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입액이 27.2조 원인데 생각보다 회수가, 제가 알기로는 회수를 그 당시에 10조 정도 추정했는데 15조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파산재단에 가 있는 것을 저희가 그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까지 예보를 통해서 은닉 재산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형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궁금한데요.

지금 1년 연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장해서 이 부실을 메우는데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부실이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김형연 위원** 그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저희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형연 위원**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고 치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제가 발언을 잘못하면……

○**김형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내년에 발생하면 그것까지도 메꾸……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극단적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소요될 때를 전제로 하시면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부실이 될 저축은행은 현재 정부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머전시나 컨틴전시를 말씀하시면 그 돈은 다시 예보기금에서 차입을 하면 될 겁니다, 특별계정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연 위원** 특별계정이 없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김형연 위원님이 그냥 예를 들어 한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신탁이라든지 제2금융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또 항상 상임위에서 많이 위원님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지금 모든 부보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 1년 더 동참 합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위에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 내셨다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통했습니다.

○**박홍배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를 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라든지 생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보협회, 금투협 이렇게 5개 업권이 다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배 위원** 지금 부보 대상 범위가 1억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저축은행 쪽에서 혹시 예보료와 관련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얼핏 보이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 건은 우선 답변을 나누어서 하면 금융권이 만든 부분은 금융권이 자체 해결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금융권들이 협의를 했고, 자료 금융위 의견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관계기관 간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보 한도, 예금 보장 한도를 5000만 원에서 저희가 1억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늘리게 되면 혹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부실 정리할 때 이 기금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보료, 그러니까 예금 금액의 영점영 얼마를 받는 이 예보료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건에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금자보호기금 한도를 늘린 것에 맞게 업권하고 잘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금융위가 마련한 예보료 수준 자체가 근거가 없다거나 과도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업권 쪽에서 10년 이상 금융권의 다른 업권의 도움을 받은 상황인데 이 제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새로 책정되는 예보료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다고 나오는 것이 금융위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서 타 업권이 엄청나게, 45%를 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홍배 위원** 그래도 소통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알겠습니다.

○**박홍배 위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오래된 일이지는 않지만 저축은행도 그런 책임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경영자들이 그때 과거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책임의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언석 위원** 박상혁 소위원장님이 원래 회의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자꾸 발언하려니까 미안해서……

그런데 부위원장 답변 중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김형연 위원님 질문에 조금 전에 답변하면서 내년도 이후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특별계정이 없더라도 차입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은데 맞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현재 고유계정 자체도 지금 2조 원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일단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거의 십몇 년간 예보기금이 투입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연장하고 그 이후에 특별계정이 없더라도 차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라면 금년도에 마치더라도 어차피 특별계정이 없더라도 차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동등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15조 원 정도가 지원될 것이라라고 전망을 했으나 그건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실사를 해 보고 청산가치를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27조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마 2011년도에 법을 만들 때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15조라고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알리고 또 국회에도 아마 그렇게 보고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27조가 투입된 것은 실제 투입된 금액일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15조를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게 20조가 된다 또는 27조가 된다고 하는 취지로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는데 법 만들고 실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린 시기는 언제인지,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종료를 하더라도 그냥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대원칙은 금융권에서 문제된 것은 금융권이 해결한다는 손실 분담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될 측면에서, 공동 분담을 시키는 그런 측면의 원칙을 위해서 1년 연장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만들고 한 것은 11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2년부터 십삼사 년까지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11년, 12년, 13년 저축은행 사태 보시면 이게 전이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31개 저축은행이 그 당시 한 백열몇 개인데 한 30개를 계속 전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고를 언제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저축은행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드렸고 이 기금 자체가 아마 예보기금이기 때문에 예보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보고 과정이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실무자 말은 매년 국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예, 계속하시지요.

○**송언석 위원** 추가로 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참고자료에 특별계정의 자산 및 부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부채를 보니까 외부차입으로 채권, 정부융자 그다음에 계정 간 차입 등등이 있고 자산에 미수 보험료라고 있어요. 미수 보험료 이것은 아마도 은행을 비롯한 구보금융기관에서 내야 될 보험료를 아직 안 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기……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이병재** 은행은 분기고 연납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연납, 분기납의 차이 때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연납, 분기납?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실시간으로. 일할 계산이 아니고요. 연납도 있고 분기납도 있고 하나까……

○**송언석 위원** 연납하거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분기납 하면 미리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송언석 위원** 아직까지, 내기는 널 텐데 일단 내야 될 시기를 뒤로 늦춰 왔다 이런 뜻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자산으로 회계처리된……

○**송언석 위원**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앞에 6페이지인 것 같은데 예금자보호법 30조 1항이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서 10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예금등의 잔액’이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잔액이 평잔인지 말잔인지 이것은 규정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1000분의 5라고 하면 0.5%라는 뜻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그러면 0.5%라면 은행의 예금을 생각해 보면 0.5%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그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괄호에 보면 10만 원보다 적을 때는 1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금의 10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 게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이게 아마 연간, 매년이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연간 내는 보험료일 텐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보는 이 조문이, 내가 생각하는 게 어디가 오류가 있는지를 좀 짚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첫 번째, 예금등의 잔액에 대해서 이 예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금투들이 다 가기 때문에 이 예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저희가 하위 규정에 다 아주 상세한 표로 정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분의 5라 하면 0.5가 맞는데요. 은행은 현재 요율이 0.08, 생보는 0.15, 손보는 0.15해서 상한을 정해 놔지 실제 은행은 0.08%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무자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실무자가 답변을 혹시 더, 뒤에 계신 실무자 누구신가 이름 밝히고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이병재** 예금보험공사 이병재 부사장입니다.

금융회사 중에 구호, 즉 보호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있는 중에 보호되지 않는 예금이 아

주 소액인 데가 있습니다, 아예 0원인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상징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내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자산운용사라든지 외국계 은행,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는 보호 대상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런 경우는 10만 원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이병재 예, 그렇습니다. 통일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내가 질문한 것 중에 나는 예금등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잔액이 평잔이나 말잔이나를 물었는데 그것은 답이 아직 없었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평잔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언석 위원 평잔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금융위 지침이나 그런 게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대령에서 하위 규정을 타고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시행령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송언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4조의3 2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예금보험기금하고 상환기금하고 이렇게 두 개를 회계처리하는 게 있는데 은행이니 투자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예금보험기금에는 없는 상환기금에는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환기금은 97년도 IMF 때 만들어진 부실채권 정리할 때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보시면 그때 저희가 168조 정도를 투입했고요. 그 당시 2002년 말에 저희가 공적자금 재계산제도를 도입해서 총 97.2조 원을 금융권이 갚아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에서 49조 원, 금융권에서 20조 원, 나머지 회수를 한다는 97.2조 원의 상환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신용협동조합이라 하면 농협·수협·신협 이런 쪽을 말할 텐데 그 당시에는 예보 안에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있었습니다. 있던 시절인데 지금은 현재 독립해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법을 만들 때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그 예보 밑의 노동자보호기금이 있을 때는 이 조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다 독립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조문이 살아 있는데 지금은 아마 효과가 없는 그런 조문으로 추정됩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사문화된……

○송언석 위원 사문화됐다는 얘기네요.

○소위원장 박상혁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지금 이 1년 연장을 아마 유동수 위원님이 올해 2월에 발의하셨는데 이전 법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법안이 올해 12월 31일 마감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마지막 개정이 혹시……

○조정훈 위원 지금 보니까 27조는 11년부터 15년 사이에 31개 저축은행이 지원을 했고 그러면 이제 27조가 2015년이면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스케줄을 잡아서 2026년 12월

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리라고 짐작을 했으니 올해 12월 30일로 마감을 했을 텐데 왜 1년의 오차 범위가 생긴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1년에 만들 때 15년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언제 만들 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1년도에 만들 때 15년도의 현금 흐름을 저희가 계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을 2011년에 만들고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왜냐하면 돈만 내는 계정이니깐.

○조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6년이면 27조도 충분히 갚으리라고 생각한 거였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러니까 11년에 만들 때 15년에 걸쳐서 25년까지면 저희가 갚겠다는 그런 현금 흐름을 보였는데 실제……

○조정훈 위원 어디서 차이가 난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조 정도만 했으면 했는데 27조라고 더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차이를…… 15조를 예상했으면 올해 26년 12월 30까지 갚았는데 27조면 27년에 갚는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 1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지금 다 갚고 실제 남아 있는……

○조정훈 위원 그것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그 당시 15년 전에 추정으로 일단 계산한 것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15년 전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2011년에 했으니까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2011년에는 15조로 알고 생각을 해서 넉넉히 26년으로 잡은 거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15년까지 총지출 해 보니까 27조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실제 투입금은 27조……

○조정훈 위원 12조가 더 늘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상각을 빨리 한 건데요, 상각이라기보다는 상환을 빨리 한 건데 그러면 보험료를, 예보기금 부담률을 높여서 하신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이 이미 45%를 부담하기로 했고요. 저축은행은 0.35을 0.4로 올렸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대한민국의 예금 잔액이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구보 대상 요율에 변화가 없지만 대상되는 자산이 2011년에 저희가 추정했던 게 아마 경상 증가율 정도를 추정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금융시장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돈은 충분히 그 대상으로 한 것보다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

로 회수도 꽤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니까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이게 정부기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간의 부담으로 가겠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저축은행의 책임부담비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손보, 금투, 종합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것 십몇 년째 지금, 이것 물론 자회사 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 없는 회사는 괜히 동종업이라고 연대보증 서고 있는 건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훈 위원** 이것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래서 은행은 0.08을 내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거기의 5배 해당되는 0.4를 예보를 더 부담……

○**조정훈 위원** 이것 원래 안 내야 되는 거지요. 은행과 생명보험은 사고 낸 주체가 아니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시스템 위계라는 게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의 금리도 오르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으로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2027년 완전히 갚으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 요율은 또 낮아집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갚더라도 원래 2조 원 적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유지를 해서 적정 규모의 예보료를, 저축은행 구분되어 있는 기금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조정훈 위원** 저는 이것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공동으로 해서 했지만 실은 저축은행의 간에 부담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 기여율 낮추지 마시고 순, 네트(net)가 부담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요율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정훈 위원님과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나 해마다 해결이 안 돼서 매년 일몰을 연장하는 이런 걸로—처음에 이 법 내용을 살피기 전에는—생각을 반대로, 그러면 진짜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을 계속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15년 전에 있었던 거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추정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일준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일준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2011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15조다 이렇게 했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27조다 저는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는 2011년도에 15년 정도 되면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15조를 15년

에 했는데 지금 26조 가까이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서일준 위원** 이미 저는 금융당국에서 이 정도는 27조를 알면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도 알면서도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것 국민을 속인 개연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 계산하면 15조를 15년이면 갚는다고 계산했지만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전체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27조가 되어도 15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봐지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회수도 좀 했었는데 회수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5조 정도 회수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15조 원 정도 회수하고.

그러면 각 금융사에서 결국은 지금 한 11조 정도 갚았다는 겁니까? 15조 회수가 됐으면 지금 10조, 11조 정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 정도 맞습니다. 13.8조 정도, 왜냐하면 이자비용이 있어 가지고요.

○**서일준 위원** 이자비용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결국은 전 국민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축은행 사건만 알고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해서 2011년·12년·13년도 그때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전 국민의 재산이 금융권을 통해서 저축은행 부실에 또 몇 조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12년·13년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도,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예보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팩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무거운 마음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11년도의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저축은행이, 처음에는 부산저축은행 정도 이렇게 시작되다가 전이가 돼서…… 제 기억이 맞으면 1등부터 10등 안의 절반 이상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산을 40% 이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이가 막 되면서 부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당연히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의 추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걸 1도 줄이거나 부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구조조정 규모가 커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정을 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그 당시 추정의 적정성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자료 요구하지지요.

○**소위원장 박상혁** 뭘 자료 요구하시겠어요?

○**서일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송언석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송언석 위원 지금 부위원장 발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IMF 때, 아까 상환기금 얘기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부실이 났고 그로 인해서 금융 위든 금융권이든 아니면 재정이든 누구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전 국민이 나눠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15조 원으로 전망을 했다가 27조가 들어갔다, 2배가 됐단 말이지요. 2배가 됐는데 그것이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법은 그동안에 안 고쳤다고 아까 부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 법 만들 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망했던 수치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12년·13년 보니까 다른 은행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게 2배 가까이 되었다. 결론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2011년도에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들 때 그때 국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012년·13년을 지나면서 전이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금융위 내부나, 아까 저축은행 백서를 얘기했으니까 그 백서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국회에 그때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국회 보고자료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과소 전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소위원장 박상혁 예.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억이 좋은…… 2011년도면 몇 대 국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무위원회에 있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속기록 그다음에 아까 예보에서 이것 관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했다고 했지요?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이병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국회 속기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아마 매년 국정감사나 이런 데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고 또한 저축은행 백서 등 송언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방금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료들을,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실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예, 그렇게 하세요. 과거에 국민들의 큰 부담이었고 히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자료들을 충분히 보시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직 법률 처리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이 특징이 됩니까? 해마다 같은 비율의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축은행의 자산이,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은 게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을 가지고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용하는 자산이 있는데 이게 부실자산이 되니까 국민들한테 줘야 될 돈은 100원인데 이게 50원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5000만 원까지는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 50원이 뺄까 나지 않습니까? 그 50원을 매꿔 주는 겁니다. 매꿔서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계약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저축은행에 넘기는 그 과정에 그 부실을 매꾸는 부분에 돈이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면 그 부실자산을 파산재산으로 보내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수재원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하면서 그 규모가, 한 30개의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소위 말하는 금융의 어떤 전이효과가 나타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부산저축은행, 몇 개만 정리하려다가 옆에는 괜찮니, 괜찮니 하면서 전 저축은행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박상혁** 그 시기가 그러면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1년에 시작돼 가지고요, 15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한 4, 5년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당초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게 있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담당 국장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 27조가 확정된 건 2015년입니까?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11년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신동욱 위원** 2011년에 27조는 이미 확정이……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아닙니다.

15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13·14·15로 길어지는 과정에서 부실 규모가 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정한 건 그 기금을 만들고 예보료를 얼마 내라는 정도만 정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런 예보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에서 45%로 넘겼지 않습니까? 대강 45%를 넘기고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0.35에서 0.4로 만들면 15년이 지나면 15조 정도 갚아지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기금을 만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때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생각보다 많은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저희가 그때 그 당시의 정보로 모든 걸 추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 시차가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축소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11년·12년·13년·14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한말씀만 더 여쭙보면, 그러면 15조로 추산을 했는데 27조가 된 건 그다음에 발생한 사유입니까? 전이효과를 낸 게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전체 저축은행 중에 두 가지 점

근이 가능했겠지요. 한 5개 정도만 정리하면 안정화되겠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추계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전이가 돼서 27조가 됐다는 건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처음부터 추계에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년 5월에, 정확한 날짜로 12년 5월 3일경에 그때 솔로몬, 미래, 한국 그 1·2·3·4등 저축은행을 일거에 정리하거든요.

○**신동욱 위원** 그 금액이 15조였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것까지를, 그 저축은행들이 정리가 될지 안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축은행 중에서 상위에 몇 개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게 다 계열로 연결되어 있으니깐 그 저축은행들을 추가 정리하면서…… 그런데 11년에 미래와 솔로몬, 한국저축은행을 정리한다고는 예단하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고 대략, 전체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다 합쳐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의 자산이 120조다 그러면 이 120조 중에 얼마가 부실이다, 얼마는 해소할 거다 이렇게 또 추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자산별로 이렇게 추계를 했거나 또는 저축은행별로 추계했거나 그런 것들을 종합한 걸로 일단 추정됩니다만, 나중에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저도 질문 좀 하나……

○**소위원장 박상혁** 예,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2011년도에 부실이 터졌을 때는 15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제대로 해 보니까 27조가 필요하더라. 그래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27조로 부실을 털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손명수 위원** 털었는데 그걸 다시 상환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기금을 27조 지원한 걸 다시 리커버리하는 과정인데 그게 1년이 더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맞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리커버리하는 과정에서 14.3조는 회수를 했고, 그걸로는 안 되니까 예금보험료에서 지원한 게 13.8조고 이자비용도 추가로 들었고 나머지 지금 한 2.9조가 마이너스인데 이걸 리커버리하는 데 1년만 있으면 되겠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확합니다.

○송언석 위원 회수자금이 정확하게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 자산의 부실자산을 저희가 파산재단으로 보내 놓고 그걸 가지고 경매를 하거나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겁니다. 부실화 자산의 회수자금으로 보시면……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실채권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 액면가액은 1억인데 그게 부실화가 되면 이게 나중에 부실채권으로 묶어서 팔 때는 10%, 5%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짜리를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 받은 게 여기서 말하는 회수자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평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금은 회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추정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강일 위원 맞는데 자꾸 설명을 붙이니까 틀린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소위원장 박상혁 참고로 그때 금융감독위원장은 누구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김석동 위원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명박 정부의 김석동 위원장 때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11년·12년도에 김석동 위원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때 부위원장님이 담당 과장이라고 했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중소기업과장이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국장은 누구였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이해선 국장이었습니다. 이해선 국장이었고 이 기금 만든 사람은 정은보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위원장이 계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유명한 분들 다 있었네.

○소위원장 박상혁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들을 주시고 그 자료를 좀 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재논의 시점을 정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이강일 위원 예금자보호법은 통과시켜야지요, 이제. 다 했잖아.

○손명수 위원 이쪽까지 다 했는데……

○소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이 조금 더 보시겠다는 취지신 것 같은데요?

○송언석 위원 그때 부위원장이 누구였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추경호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송언석 위원 권혁세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1년도에는 권혁세 부위원장이고 12년에 돈이 추가로 들어갈 때는 추경호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때 모셨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을 처음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만들 당시에 김석동·권혁세 라인이 있었던 거고 그때 금융정책국장은 이해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박상혁 자료를 보면 나오…… 참고적으로 여쭙볼 게 있다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이해선 국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기금을 만든 사람은 예보 소관인 정은보 국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손명수 위원 일몰 기간 1년 연장은 다 동의한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조정훈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자료 보고 다음에 넘기지요.

○손명수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박상혁 필요성 자체는 동의를……

○신동욱 위원 결국은 해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송언석 위원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봐.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서일준 위원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하도록 다음으로 넘기지요.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시지요.

저는 만약에 논의를 해서 히스토리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법적 판단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손명수 위원 그런데 이걸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은행·금융권에서 부실을 정리한다는 그 원칙하에 지금 1년을 더 연장하자는 건데 여기에 이견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하여튼 정회를 했다가 4시 1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이상 11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 전문위원님, 아까 말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주요 내용 표를 보시면 11개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운데 일부 안들은 제3자 인증제도와 한시적 면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내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공시제도 도입의 입법 배경과 관련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 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추세이며, 정부는 지난 2026년 7월 단계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제도 도입 시 주요 논의사항으로 먼저 ESG 공시 의무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부칙에서 자산 규모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식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시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들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성격 및 글로벌·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기후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시 내용을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되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시 채널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하거나 별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재무정보와의 연결성을 감안할 때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공시 채널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면책 도입 여부 및 수준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일정 기간 배상 책임, 행정 제재, 형사책임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책하는 내용에 대하여 한정에 의원안은 한시적 면책 이후에도 추정 정보, 불확실성 정보, 예측 정보 등에 대해 제도적 면책을 도입하고 있고, 박상혁 의원안은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 제

도적 면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의무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의무 이행 등을 위한 측면에서 한시적 면책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한편, 민법상 배상 책임도 면책할지 여부 및 한시적 면책의 경우 그 기간 등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그 밖에 한정에 의원안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이사가 중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ESG 공시의 정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12쪽입니다—ESG 관련 사항을 업무보고서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한민수 의원안은 업무보고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김남근 의원안은 주권상장법인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31쪽에서 ESG 공시 기준 관련 보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정하는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되 위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정·개정 업무 전부를 위탁하는 방안과 제정·개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으로 구분됩니다.

검토의견 쪽 보시면 공시 기준 업무 위탁 방식에 대해서는 기준 제·개정의 독립성 및 전문성 측면과 확장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광범위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개정안들은 공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통일성·객관성 확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 기준 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김주영 의원안과 같이 기후 관련 기준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향후 사회·거버넌스 등과 관련한 공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다음, 하단입니다—위탁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예산 또는 금융감독원의 발행분담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업무 위탁 범위, 지원 주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관련 해설서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이행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40쪽부터 제3자 인증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들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금

융위원회는 인증기관 및 공시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40쪽 좌측 표에서와 같이 개정안들은 부칙에서 자산 규모별로 제3자 인증 의무화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의무 유예기간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45쪽은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 요건 외에 등록 절차, 등록 거부 사유, 요건 유지의무, 등록기관 소속 전문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 주요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구체적인 자기자본 요건은 회계법인 자본 요건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자격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충분한 전문인력 요건으로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은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인증 기준을 정하는 절차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되 박상혁·김주영 의원안은 전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한정애 의원안은 별도의 민간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제3자 인증 결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인증 기준 제정 주체, 즉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지속가능성 인증업무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입니다.

개정안들은 인증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관련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인데 인증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해상충 또는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증보고서 제출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감사법과 같이 공시대상법인이 인증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56쪽은 인증기관 업무보고서 공시, 검사 및 조치 관련 사항입니다.

인증기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인증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수행하며 인증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정·중지명령 미이행,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증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박상혁·김주영 의원안의 경우 거짓·부정 등록의 경우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다른 금융투자업자 등은 거짓·부정 등록의 경우에도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취소 여부를 금융위원회 재량으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과징금 규정입니다.

한정에 의원안으로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증 보수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외부 감사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66쪽 벌칙 규정입니다.

66쪽 보시면, 개정안들은 ESG 공시의무화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공시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인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로 개정안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부칙입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1년·3개월 등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 및 2028년부터 ESG 공시의무 적용을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한정에 의원안과 같이 제삼자 인증제도를 2년간 유예하여 적용할 경우 인증기관 등록 및 인증기준 마련, 금지행위, 인증의무 등의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총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지속가능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글로벌 환경이나 무역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EU가 CBAM이라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특히 29년부터 EU의 역외 기업에도 이 부분 공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수립계획을 마련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기업의 평가에 직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투자자 분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번에 논의되는 기후 관련돼 있는 리스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판단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기관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기업의 수용성 그다음에 인증기관 이런 인프라의 준비 가능성을 봐서 저는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접근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7쪽입니다.

자산 규모별 ESG 공시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쉽게 말하면 법으로 할 것이냐 부칙으로 할 것이냐 이야기인데 저는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쉽게 이해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법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정애·민병덕·이현승 의원안의 체계가 맞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저희가 단계별로 28년부터 10조 원 그다음에 29년에 5조 원, 그 이후에 2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 범위 내 한정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시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그냥 지속가능성 하면 기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시하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정애·이현승 의원안이나 대부분 의원님들이 회사의 자금조달이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 쉽게 말하면 영어로 머티리얼리티(materiality) 해 가지고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한정적으로 제공을 안 하면 모든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한정해서 자본시장법에 들어가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 채널(방식)은 글로벌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 별도 보고서로 하면 투자자가 보고서를 또 따로 찾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투자자나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안에 별도의 챕터로 이렇게 해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ESG 공시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면책……

○소위원장 박상혁 31페이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31페이지입니다.

○민병덕 위원 10페이지 했나요?

○소위원장 박상혁 중간에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죄송합니다. 제가 면책을 빠뜨렸는데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면책……

○민병덕 위원 10페이지.

○소위원장 박상혁 10페이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죄송합니다.

이 면책 여부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새롭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형사법체계의 어떤 틀과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국제적으

로 보면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 해서 대부분 일정 기간 면책을 해 주거나 또 어떤 예측 정보나 이런 추정 정보를 면책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제재, 행정제재 이 3개의 틀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냐의 입법 정책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한시적인 면책 또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쪽, 공시기준이 저희가 들어갈 때는 ESG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만 아시다시피 E라는 것은 환경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은 기후에 한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도 환경이라는 게 오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에 한정하는 그런 공시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나중에 S가 들어가면 근로자·소비자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G가 들어가면 기업의 반부패, 내부통제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기후에너지부하고 중기부하고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적 역할이 있는 공적 영역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기준이 민간이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사람들의 전문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삼자 인증제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탄소배출이나 오염 쪽의 많은 기관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드는 보고서의 진실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이것을 자문도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됐다고 이렇게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제적인 이런 인증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인증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의무화하는 게 맞는데 현재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그냥 준비 상태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인증을 의무화하는 시기는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는 한정에 의원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5쪽, 인증기관은 당연히 저것하고 똑같습니다. 감정평가나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의견에 대해서 감사 의견의 적정을 판단하거나 이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충분한 재무나 능력, 전문기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이 인증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대부분의 의원님, 김주영·박상혁·한정에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인증기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ESG 공시기준이고요. ESG 공시기준을 인증하는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계로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이 있고요. 기업회계 감사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IFRS 같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라는 건데 지금 여기 인증기준이라 하면 감사인에 해당되는 제삼자 인증기관이 이것 기준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해상충이 없어야 된다, 내부통제를 갖춰라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아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예 민간영역이 없기 때문에 일거에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정부가 이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 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가, 왜냐하면 인증하는 사람이 인증기준을 만들면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제삼자 기준이 맞을 것 같고.

이 예를 고민을 해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민간 인증기관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이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해상충이나 비밀누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인증기준을 사업 보고서에 첨부하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절차적인 편리성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인증기관의 공시, 검사,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인증기관의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감사의 기준을 위반했을 때 회계 수임료의 5배의 보수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와 동일하게 도입하는 한정에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칙 조항입니다.

이 별칙 조항에 기업이 인증보고서를 누락하거나 위반하는 부분이나 비밀누설,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27년도 회계안을 28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28년에 27년 재무제표를 공시하려면 27년 1월 1일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의 배출을 측정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포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시면 하위규정을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작년, 올해, 특히 올해 기업체·산업계 전문가들하고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사실상 법정 기준은 아니지만 민간의 전문 의견을 들은 정부 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처와 합의된 기준이 지금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에 만약에 공시를 하겠다면 저희는 3개월 내에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셔야지 기업들이 내년 27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인증기간 2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들을 텐데,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는 ESG였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당을 불문하고 각종 ESG 토론회와 활동들이 굉장히 빈번했었고.

아마 제일 먼저 말씀하실 게 국회ESG포럼 대표이신 민병덕 위원님이…… 이것은 여

야 같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법안도 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먼저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바로 김재섭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일단 큰 틀에서 ESG 관련해서 법안소위를 하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야가 공동으로 ESG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특히 정부안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정부안도 국회의원들 말을 많이 받아들여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 ESG포럼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안이 대체로는 무방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ESG와 관련해서 공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시기상조라고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는 방식은 뭐였나 하면 면책기간을 두겠다는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는 업체보다는 공시를 하는 업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훌륭한 기업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수로 나오는 많은 형사적·민사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겠다, 안전한 항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한들을 두겠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3자가 인증해야 되고.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것을 어디에 공시할 거냐인데, 거래소에만 공시하면 되냐 법정 공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업체들은 계속해서 거래소 공시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거래소 공시로는…… 우리가 면책이라는 것을 법으로 면책한다고 해 줘야지 오히려 더 낫지, 거래소 공시한다 하면 거래소에서 잘못 공시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정 공시를 하면서 법으로 면책을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업에게는 더 안전한 것이라라는 측면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저는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재섭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관련해 가지고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이 금액이 기준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달리 둔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 같은 것들은 좀 있는지 일단 여쭙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단 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에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김재섭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업종별로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ESG라고 하면 아까 기후 문제에 한정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예를 들면 철강 같은 제조업이랑 쿠팡 같은 서비스업, 배송업이랑은 ESG의 적용 여부가 너무 천차만별이 될 테라서요. 일단 자산 총액만으로 ESG의 공식적인 그다음에 일관된 내지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산업별로 뭔가 다른 게 있는지를 먼저 여쭙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산업별로 차등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 전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기준에서 비중이 낮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기업들은 유예를 해 나갈 기준이고 저희가 10조 원 정도 연결 대상으로 하면 한 107개 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개 사가 연결기준이면 연결 자회사는 총 184개 정도를 하게 된다

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조 원까지 늘리더라도 259개에 불과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 한 750개 중에 259개까지만 저희가 이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재섭 위원** 아니, 개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적다 많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탄소배출량으로만 따져도 기본적으로 포항제철과 어디 게임업체 간의 탄소배출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같은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물론 ESG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핵심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기준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산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들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고 미국 기준 다르고 또 유럽 기준이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성화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지표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정도는 되고 나서 이게 도입이 돼야 되지 무차별적으로 일단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은 다 도입해 보고 나서 차근차근 한다는 것은 저는 글썽요,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취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국제 기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기후 관련돼 있는 공시의 핵심은 탄소배출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과 많은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스코프 1·2·3 해 가지고 집 굴뚝에서 나오냐 다른 전기, 게임업체도…… 스코프 2라는 것은 전기를 쓰게 되면 발생하고 있고요, 게임을 쓰는 다른 공급망에, 컴퓨터 이런 데서도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스코프 1·2·3를 합쳤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가 탄소배출이 적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체계는 일단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장기업 중에 큰 기업들 정도 또 대부분 그 기업들이 고탄소 배출 업종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그렇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 그러니까 특히 스코프 3 문제에서는 해외에서도 되게 분쟁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질 것인가,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특히 스코프 3 문제로는 많이 접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선례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좀 여쭙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스코프 3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에서 나오면 1이고 생산할 때 전기를 끌어쓰면 2인데 그것 외에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기름을 쓰거나 타이어가 마모되는 이 스코프 3는 측정에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탄소 배출이 아닌 업종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스코프 3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할 생각이고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저희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김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먼저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질문할게요.

○**조정훈 위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하고 무거운…… 무겁다기보다는 중요한 법안들 그리고 우리 기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 ESG에서 포럼 회장까지 하셨다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ESG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유엔과 MDG와 SDG를 만들면서 기업형 버전으로 ESG라는 개념을 2004년

에 처음 논의했을 때 저희는 솔직히 ESG라는 그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MDG와 SDG가 정말로 어려운 개념이었고 유엔과 세계은행 회원국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또 지금도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거버넌스 그다음에 사회적 의미에 대한 내용들이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 첫 번째 법안을 검토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위험들도 있어 보입니다.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3개월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2028년 도입하려면 2027년 1월부터 측정을 해야 되고 따라서 3개월을 역산해 보니까 이번 달 말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면 27년부터 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아마 금융위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먼저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준을 먼저, 한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만 특히 미국과 EU의 기준들을 검토해서 호환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가라는 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계업에도 좀 있어 봤는데요. IMF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회계 기준과 미국 US 기업의 회계 기준이 달라서 많은 기업들이 2개의 회계 감사를 받고 2개의 회계 기준으로 보고서를 쓴 적 다 아실 겁니다. 다행히 회계 기준이 많이 글로벌화 돼서 이제는 그런 기준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국제시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넘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차피 수출해야 되고 해외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무조항들이 생기니 어차피 우리도 대응하자라는 말이 저는 현실적으로 더 무게가 있게 들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기준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아까도 소기업들 그리고 측정이 어려운 상황들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모세혈관까지 가다 보면, 특히 환경 분야에서 스코프 3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또 거버넌스 문제도 특히 반부패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반부패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회계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부패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 지금 배상 책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보고서도 회계 기준의 적정이라고만 얘기하지 부패 가능성까지 절대 못 가는 상황인데 지금 ESG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기준이 기업 생태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학자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이 합의가 되는가 그리고 주요한 기준들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있는가라는 면에서 저는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준들을 로드맵에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정도 기준이면 할 수 있겠다…… 특히 E와 S와 G가 말은 붙여서 ESG지만 너무나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저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환경 얘기하는 게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평생 금융만 해 왔을 텐데 탄소배출량을 지금 고민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 이것 솔직히 전문 영역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석사학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융위가 한가한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다른 생뚱맞은 영역에 지금 새로운 의무를 맡는 게 맞는가? 솔직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들이 들어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등은 지금 기준을 발표하고 의무화 시기까지는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의무가 아닌 선택형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고탄소 배출 기업들은 이것 하지 말라 해도 해야 됩니다, EU에 수출하고 캘리포니아에 수출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라 말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든 기업에 강제적으로 130개, 200개, 결국 3~4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코스피 기업에게 적용시키겠다는 건데 이 논의는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의 실익과 해외 사례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제조업 기반 국가들 중에서 금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가요? 독일 일본 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일본은 저희보다 1년 빨리 도입을 했고요.

○소위원장 박상혁 1년 빨리 도입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27년, 그러니까 26년 통계를 27년 내년에 하고 있고요. 저희는 27년을 28년 하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1년 앞서 있고요. 호주는 26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통계를 26년에 했고요. EU는 25년부터 했고. 다만 싱가포르의 26년이고요. 중국하고 캐나다 미국은 현재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EU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런 제조업 국가, 특히 저는 이걸 할 때 참고할 만한 게 일본이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산업별 업종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없고 특히 일본 같이 제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걸 한 도입 배경은 뭔가요, 금융위에서 파악하기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규제, 탄소 규제가, 예를 들면 해운에 관해서도 에코십이라고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특히 EU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으로, 시범(CBAM)이라는 탄소를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는 제도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부분을 미리 가야지 오히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고요.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석탄 기업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전략적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지만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그래서 최근 이와 관련해서 국제 연기금도 그렇고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의견을 낸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낸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말씀대로 지금 ESG 공시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국민연금도 저희가 이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보고서 안에 ESG 공시를 빨리해 주는데…… 그쪽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작은 기업까지는 안 해도 좋으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저희가 2조 원까지 가면 한 250개 기업 그러니까 코스닥·코스피를 다 합쳐서 2200개 중의 한 10%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200개~250개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또 다른 위원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꼭 발언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송언석 위원 발언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박상혁 말씀하세요, 부위원장님.

○송언석 위원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13년부터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제가 오늘 거래소 공시를 하나 가져와서 꼭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지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 기업들이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조정훈 위원 이미 저도 알아요, 회계법인도 있고 인증보고서가 300건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해야 될 기업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두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래서 면책을 해 줘야 되는데……

○조정훈 위원 그걸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위원님, 그리고 ESG의 E는 아까 이야기대로 탄소 외의 수자원·폐기물·생물다양성 많거든요. 저희 그것 안 할 생각이고요. G의 반부패·정치적 중립·내부고발제 이것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ESG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 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만 그중의 핵심은 기후와 관련돼 있는 탄소에 한정하겠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프라나 이런 준비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가 13년부터 준비했고 최근 1·2년 간에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인프라 기관들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상혁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욱 위원 부위원장님 답변에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병덕 의원님 애써 주셔서 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 틀에서 저는 크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드느냐의 문제가 핵심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이미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자기네 회사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유럽에 내가 수출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이미 그것 다 열심히 준비해서 수출할 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이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서의 문제도 일단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위원장 말씀 중에 이 ESG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해서 하자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약간 고백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뭐 압박받는 것 있습니까? 이거라도 하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다른 나라도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 더 선진적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아예 전향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제도를, 더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박상혁 위원장님이 21대 국회에서 ESG가 가장 큰 화두였다는 것, 이를 테면 그때의 전 세계적인 기업 경영에 대한 조류가 ESG를 굉장히 강조하던 때였잖아요, 2020년을 전후한 이 시점이. 그래서 그때 이게 됐지만 그 이후로 이 ESG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은 좀 주춤한 측면이 있는 게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 같은 경우에 미국이 거기에서 확 빠져 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먼저 이걸 확 치고 나가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우선순위 같지만 약간은 우리가 좀 눈치 보면서 가도 되는 것 아니냐—솔직히 말씀드려서—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필요한 기업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우려들이 저는 거의 다 맞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기업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이 부분을, 거의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온실가스 배출 문제·기후 문제는. 이 예측의 문제를 의무 공시를 하도록 해서 기업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만들 가능성, 공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못 지켰을 경우에, 물론 면책 조항이 국내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시 때문에 그 약속한 것들이 해외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데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기업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전체적으로 ESG의 중요성 또 그동안에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중을 합니다 다만 좀 더 큰 맥락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하나만 질문하고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도 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주정부의 정치적인 이슈가……

○소위원장 박상혁 대만 홍콩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대만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가 돼 있는데, 하고 있다고……

○소위원장 박상혁 알기로는 아시아의 주요 우리 경쟁 상대라고 하는 대만 홍콩 일본 싱가포르 호주가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빠른 게 아닌 것 같은데, 평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빠르다는 평가가 어떤 게 빠른 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그렇지만…… 저도 처음에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일본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일본처럼 보수적인 나라에서, 그걸 보고서 상당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도 일본이 하고 나서 좀 속도를 낸 측면이 있는데 저는 자본시장의 투자자 1500만 명한테 지속 가능한 투자 판단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그런 측면, 기업의 경쟁력도 생각했지만 일본 자본시장을 위해서 한 측면이 아닌가 싶었고.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할 때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리스크를 측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재무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재무 정보 외의 기후 리스크와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자본시장적 측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지금 박상혁 소위원장께서 처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느냐라고 했을 때 재정준칙 도입했다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준칙을 어떤 형태로 도입했느냐 하면 법에 재정준칙을 명확하게 박아서 채무는 어떻게 하고 수지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 나라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본 호주 EU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미국 이런 우리 주요 무역 상대국 또는 경쟁국에 해당되는 이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ESG 공시를 법으로서 의무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 했을 경우에는 또는 위반을 했거나 좀 부실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면든지 이런 식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업계의 자율 또는 주식시장, 거래소에서 자율적인 어떤 준칙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송언석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조정훈 위원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 회계기준도 금융위 소관 사항인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최종 책임의 정부 관할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업회계기준은 민간 전문가들인 회계기준원에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후 보고를 받

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다 따라야 되는 기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통상 그렇게 봅니다.

○**송언석 위원** 그렇잖아요. 매출이 10조든 아니면 10억 미만이든 다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회계기준도 정부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 기준을 따라라 또 법으로서 이걸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기준 자체는 민간 자율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시장법상의 기업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산·부채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통상적으로 수십 년간 자본시장이 발달해 오면서 민간 영역에 쫓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부분을 직접 하면 이걸 또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송언석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간 기업들에게 또는 민간 업체에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공인회계사에서 만들고……

○**송언석 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에서 만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저희가 그것도 보고를 받고……

○**송언석 위원** 결국은 공인회계사도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공인회계사회도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언석 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기관이지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ESG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기준부터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쳐 주고 거기에 기업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먼저 법으로서 당신들은 어쨌든 ESG 공시를 먼저 하시오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해 놓고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주겠다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참고자료에 보니까 ESG 자율공시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도 잘 모르겠는데 2025년도 기준 해 가지고 인증보고서 314건 중에서 회계법인, 온실가스검증기관,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작성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ESG 자율공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근거를 한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상위 규정은 증권거래법입니다. 증권거래법에서 거래소의 규정을 정할 권한을 줬고요. 거래소가 ESG 공시……

○**송언석 위원** 거래소 기준입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해외 사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봐야 될 텐데 미국 같으면 아까 박상혁 소위원장님 말씀에도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별도로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걸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일본이 우리하고 경쟁 상대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다고 지금 부위원장님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분석과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법을 상당 부분, 이 새로운 법에도 좀 상당 부분 고려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료에 근거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김형연 위원님 하세요.

○**김현정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이게 지금 자꾸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가 이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취지가 ESG 공시를 의무화해서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하고 있는 거, 자율공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율공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보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자율공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시 의무를 지금 도입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표준화를 좀 시키겠다는……

○**김현정 위원**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인 글로벌 추세도 전부 다 의무공시로 지금 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고려가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ESG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환경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것도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의 내용들이? 10조, 5조, 2조 이렇게. 거기다가 또 1년에서 3년 동안의 면책기간도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려되는 지점이……

저는 핵심은 자율공시를 할 거냐, 의무공시할 거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무공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 법안에 지금 담겨 있고 미진하면 더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부담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면책기간도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낸 법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기업 투자자 보호랑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의무공시를 도입했을까라는 걸 저희가 되짚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조금……

○소위원장 박상혁 김형연 위원님 하시고……

위원님들, 이게 우리가 예정된 안전이 뒤에 신탁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더 하고 어떤 중지를 모아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렇게……

김형연 위원님까지 하시고 계속 심사하고 또 다음 신탁법을 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연 위원 김형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입법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ESG 정보가 필요해서 그것을 의무공시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니, 제가 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규제나 이런 쪽에 기업이 대응하는 측면하고 EU에 수출해야 되는 측면……

○김형연 위원 주요 입법 목적이 뭐예요, 주요 입법 목적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이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투자자에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거가 핵심이고요.

○김형연 위원 그게 핵심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철학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걸 미리 측정하고 대응하고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한민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지금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차를 두고 의무공시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규제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의무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민간의 규제를 신설하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이런 규제 신설과 관련되어서 규제영향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입법으로 하게 되면. 규제영향분석에 의하면, 그 분석 항목을 보면 규제 신설의 필요성, 그리고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그리고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규제영향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정부 정책을 지금 우리 입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 안에서도 이게 정부입법은 아니지만 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말하는 규제영향분석 정도는 자체적으로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규제영향분석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희가 아마 이 부분에 연구용역이나 저희가 10년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편익과 비용에 대한 그런 거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정부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규제영향평가서의 방식은 없지만 수많은 연구와 이런 평가와 그런 저희 정부 내의 논의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연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제영향분석 항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 낸 문서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정말 국민경제에 정말 중요한 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외국에 입법 되어 있는 아까 몇 개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입법례하고 지금 수출을 최고 많이 하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미국이라든지 아예 도입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실제 기업의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좀 충분히 자료도 수집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고 다음 신탁법도 상정돼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상혁** 예, 말씀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과 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신, 논의를 하시는 분들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학술 평가라든지 국회 안에서도 위원님들 간 ESG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위원 함께 공익단체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토론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들이 지금 축적이 돼 있고 한 부분들을 자료로 잘 정리해서 특히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잘 정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금융위에서 별도로 찾아뵙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민병덕 위원** 산업계의 의견도, 산업계의 의견도 다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 국내 최대 연금인 국민연금에서의 요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기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그런 해외에서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해외 사례 플러스 주요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그걸 같이 좀 회람을 시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소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21항까지 이상 11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곽현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1쪽 보시면 개정안들은 주로 신탁업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 4개의 법안들은 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기능 강화 중 취급재산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신탁법에서는 수탁가능재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열거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수탁가능재산 범위에 담보권, 채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담보권 신탁을 허용할 경우 수익자의 재산 처분 비용 경감, 안정적인 담보권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6쪽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담보대출 등 채무와 결부되어 있어 신탁 설정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경우 열거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여 다양한 신탁재산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법은 수탁가능재산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조문 신설이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의 법률관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탁가능재산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시면 현재 수탁가능재산 관련 위반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개정안은 이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탁가능재산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등의 법익과 제재처분으로 제약되는 신탁업자 등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은 비금융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신설입니다.

현행법은 본질적 업무의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문화된 신탁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업무위탁을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쪽에서 보시면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일반 규정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처분과 유사하게 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불건전 영업행위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었으나 현행 체계하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불건전 영업행위 요건 중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신탁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재를 상향하는 것인데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이 건전하게 판매·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내용 중 먼저 발행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신탁업자의 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금전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되 수익증권 발행 시 신탁재산 종류와 구성 및 범위, 신탁업자 유형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새로운 유형의 권리와 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구체적 사항으로 27쪽 하단에서 보시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의 분배·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은 수익권 차등이 가능한 신탁법의 일반 원리를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이어서 28쪽 수익증권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발행한도 및 발행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자산유동화계획 또는 펀드 등과 유사한 규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9쪽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위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수익증권 발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수익증권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위탁자 등에게 수익증권 발행의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하여 부실 재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 한편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효과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유 대상 물량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29쪽 하단 공모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하도록 하여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과 30쪽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마련 규정은 수익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4쪽입니다.

44쪽부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판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자기발행 신탁 수익증권 판매를 투자매매업으로 규정하는데 신탁 수익증권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 말씀드리면, 45쪽입니다,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열사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의 판매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투자

자의 선택권 침해 방지 등의 취지로 펀드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 수익증권의 판매 관련 법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펀드 등에서의 제재처분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 대하여 부실자산 발생, 수익자 집회 결의 등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신탁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 등의 확인을 받아 주기적으로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며, 50쪽입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집회를 두도록 하되 신탁계약을 변경하여 손해가 미치는 종류수익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류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의 결의가 추가로 있도록 명시하며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를 작성·공시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익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펀드와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52쪽에서 신탁 수익증권의 운용 등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익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이고 대부분 펀드 등에서의 제재처분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본시장법 내용이고 이어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4개 법안들이 있는데 마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상혁 예,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6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내용 남아 있는데, 6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2쪽은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신탁 지원 등의 내용으로 먼저 유언대용신탁에 위탁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자가 위탁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64쪽 보시면 신탁업자의 행위원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선관의무,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더하여 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공정하게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신탁업자의 행위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66쪽입니다.

신탁 수익증권 전자등록 신청 의무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자증권법 개정안으로 이는 의무적 신규 전자등록 대상에 개정안에 따른 신탁 수익증권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 간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산유동화법 내용입니다.

자산유동화법상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정비된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배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0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입니다.

두 법률 모두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가 된다면 이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합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두 개정안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입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신·구 법률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해 필요한 규칙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우선 총론을 말씀드리면 김상훈 의원님하고 이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자본시장법 등 5개 법률안은 우리 신탁업 혁신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1년도에 일반법인 신탁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에 전면 개정을 했지만 저희 자본시장법이 있는 이 신탁업법, 그러니까 신탁법은 민사를 규율하는 신탁법이고……

○송언석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상사법을 하는 신탁업법은 지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노후, 상속, 치매, 가업 승계 등에 대한 신탁이 될 것이고요. 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18년도부터 검토해서 21년, 22년에 김희곤 발의하신 법안이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이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 자본시장법 포함 5개 법률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운영했던 규제샌드박스 사업들이 있었었겠지요, 몇 개라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5개 있었습니니다.

○박홍배 위원 5개 있었습니까? 5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사례와 관련한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법안과 달리 규제를 푸는 법안인데 규제

를 푸는 법안이라서 그런지 금융위 직원분들의 표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신탁업자가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실제 신탁업자들의 시장 규율은 금융감독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감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금융위는 문을 열고 금감원이 뒷수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의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감독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좀 제출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적 취지,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데 대응하자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아침 10시부터 긴 시간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의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이번 시장법도 그렇고 자료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그리고 아까 저축은행 일몰 관련되어서도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국회의 보고사항이라든지 국회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법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재섭 김현정 김형연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이강일 조정훈 최은석

○청가 위원(1인)

박민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병재

임시회의록